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임석규 입니다.
- 2002년 9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
 - 동 기금은 대여제도 시행이후 시중은행의 금리가 하향(3%)됨에도 기금의 대여이율이 높아(5%) 이로 인한 회망자가 없고 기금의 운영이 잘 이루어 지질않아 동 조례안의 목적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바, 이를 현실적인 금리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
 - 생활이 어려운 자와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에게 사업자금(전세점포 등)를 원활히 대여하여 자활을 돋고자 함 입니다.
- 주요골자로는
 - 자활공동체 대여자금 이자 및 사업자금 이차보전 범위를 당초 연 5%에서 연3%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
 - 기타사항으로는 조문내용 중 일부의 자구수정(범위내를 범위안으로)를 하는 것 입니다.
-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.
 - 먼저 동조례 제8조1항과 제9조 내용중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안에서”로 자구 수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용어순어 차원에서 검토한바 타당하며
 - 두 번째 동조례 제8조 제3항의 내용중 이자율 “연5%”를 “연3%”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시중금리 등과 생활

이 어려운자, 자활공동체 등의 자활능력 제고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인하조정으로 사료됩니다.

- 그러나 동조례 제9조제1항의 이차보전 범위를 5%에서 3%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은 이차보전 액수를 오히려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기금운용 취지 및 동조례의 이차보전 조항 설정취지와 상치되므로 5% 이차보전이 되도록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금번 제안된 동조례 개정안 검토를 위해 수집된 기초생활보장기금 현황, 동기금 운용 현황, 동기금의 용도, 타시군의 조례개정 현황, 동조례 개정추진상황, 동조례 전문 등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